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 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전국 병원장
 참 조 보험(원무) 부서장
 제 목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

- 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96호(2015.11.17)
- 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97호(2015.11.17.)
- 다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98호(2015.11.17.)

2. 위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의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85호, 2015.10.28.)」 고시,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77호, 2015.5.21.) 고시 및 「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82호, 2015. 10. 22.) 고시 일부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가. 주요 개정 사항

구 분	주요 내용
고시 제2015-196호	· 암환자교육상담료 1항목 신설 ·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 검사, 양전자단층촬영 2항목 개정 · 테이코플라닌약물정량검사 1항목 기결정 추가
고시 제2015-197호	·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
고시 제2015-198호	· 선천성 심기형 12종, 극희귀질환, 상세불명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 본인부담경감 대상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근거 신설

붙임: 고시 제2015-196호, 고시 제2015-197호, 고시 제2015-198호 각 1부

※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 www.kha.or.kr /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함)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대리 이다미 팀장 정윤학 국장 류향수

시행 : 보험 제 2015-558 (2015.11.17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ldm@kha.or.kr